



방학 기간 중 유해환경 접촉 금지 및 불법 행위 차단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겨울방학은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이 학교에서 가정 및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시기로,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비행 및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방학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특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임을 인식하여 자녀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타 관내에서 발생한 소년범 강력범죄 관련, 우리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와 관련 피해확산을 막고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녀들 상대 신고 요령 등 인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법령 및 처벌 규정

1. 주민등록증 등 위·변조

- ① 형법 제 225조(공문서등의 위·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 ② 형법 제 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2. 주민등록증 등 부정 사용(주민등록법 제37조)

- ① 타인의 신분증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②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3. 공갈, 협박, 강요

- ① 형법 제 350조(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형법 제 283조(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③ 형법 제 324조(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방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예방교육, 홍보 활동,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 교육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24시간 운영)** 또는 해당 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